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9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91호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2. 군산시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용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2. 휴·폐업중인 업소

3. 용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용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제4조 본문 중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모범음식점 지정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제6조제2항 중 “용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을 “용자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용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용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당해연도에 한한다.

제7조제2항 중 “영업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7퍼센트(용자금리 6퍼센트”를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퍼센트(용자금리 1퍼센트”로, “4퍼센트(용자금리 3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조례”를 “1퍼센트(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용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자금을 수령 후 용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용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제7조제4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융자 및 상환방법”을 “상환방법”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조례 제4조제6호에 의한 위해식품등에 대한 시민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위원회 해촉 등)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용자대상자는 시장의 식품위생 영업신고(허가)를 받고 6개월 이상 군산시내에서 영업을 한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시장은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3조(용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용자를 받을 수 있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품위생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li> <li>2. 군산시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li> </ol> <p>&lt;삭 제&gt;</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용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li> <li>2. 휴·폐업중인 업소</li> </ol>

제4조(용자대상 우선순위 등) 용자 대상자의 용자신청금액이 용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업소 등에 용자 우선순위를 부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용자 우선 순위를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용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용자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별지 제4호서식)
  - 4. · 5. (생략)
- <신설>

3. 용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용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제4조(용자대상 우선순위 등) -----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  
 -----

제5조(용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 <삭제>
- 4. · 5. (현행과 같음)
- 6. 모범음식점 지정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② (생략)

제6조(용자대상 선정 통보) ① (생략)

②시장은 확정된 용자대상업소와 용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용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제7조(용자 및 상환조건) ① (생략)

②영업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7퍼센트(용자금리 6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대출금리는 연리 4퍼센트(용자금리 3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용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용자대상 선정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용자금액을-----  
-----  
-----.

③용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용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당해연도에 한한다.

제7조(용자 및 상환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퍼센트(용자금리 1퍼센트----- 1퍼센트(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  
-----.

③용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모범·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④시장은 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용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용자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 5. (생략)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용자금 수령후 용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퍼센트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7. 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용자후에 지정이 취소될 경우

⑤기타 용자금의 용자 및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  
-----  
-----.

1. 용자금을 수령 후 용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용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 5. (현행과 같음)

6. 육성자금의 용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삭제>

⑤----- 상환방법-----  
-----  
-.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조  
 례 제4조제6호에 의한 위해식품등  
 에대한 시민 신고대상은 별표 2  
 의 신고대상 내용에 해당하는 행  
 위를말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에  
 게 위해식품 등을 신고(이하 신고  
 라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신고자  
 의예금계좌에 입금·지급한다. 다  
 만, 동일건을 상부기관 등에 신고  
 하거나처분권한이 있는 업무는 보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으로 행정  
 처분 완료된 후에 지급하며, 동일  
 품목에 대하여 2이상의 위반행위  
 를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  
 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보상금 지급은 1차 위반시의 행  
 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식품위생감시원·명예식품감시  
 원·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 보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조  
 례 제4조제6호에 의한 위해식품등  
 에대한 시민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삭 제>

<삭 제>

호단체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그 직무와관련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동일 신고자에게 기관별(도, 시·군·구) 당해연도 50만원을 초과한보상금보 칙

<신 설>

제15조(위원회 해촉 등)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신 설>

제1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의 직·성명
-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 4.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업종별 업소당 용자한도액(제7조관련) (단위 : 백만원)					[별표 1] 업종별 업소당 용자한도액(제7조관련) (단위 : 백만원)							
업종명	구분	계	영업시설 개선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종명	구분	계	HACCP 시설자금	영업시설 개선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 접 객 업	식품제조·가공업	60 이내	50 이내	해당없음	10 이내	식품제조·가공업		22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해당없음	20 이내
	휴게음식점	40 이내	50 이내	해당없음	10 이내	휴게음식점		7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해당없음	20 이내
	일반음식점	40 이내	30 이내	해당없음	10 이내	일반음식점		7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해당없음	20 이내
	일반음식점중 모범음식점	50 이내	30 이내	10 이내	10 이내	일반음식점중 모범음식점		12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50 이내	20 이내
	일반음식점중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	60 이내	30 이내	20 이내	10 이내	일반음식점중 향토전통음식점		12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50 이내	20 이내
	단란주점	10 이내	해당없음	해당없음	10 이내	제과점 영업		7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20 이내
	유흥주점	10 이내	해당없음	해당없음	10 이내	단란주점		20 이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 이내
						유흥주점		20 이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 이내
					위탁운영 집단급식소		7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20 이내	

현 행			개 정 안
<p><b>[별표 2]</b>  <b>위해식품 등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제11조관련)</b></p>			<p><b>[별표 2] 삭제</b></p>
구분 분야별	신 고 대 상	보상금 (만원)	
부 정 · 불 량 식 품	1	인체에 유해한 물질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의 제조·가공행위	
	2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보존·또는소분·판매 행위 가.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식품제조가공업 다. 즉석판매제조가공 및 소분·판매업 라. 식품운반업 및 보존업	
	3	무신고용기·포장류 제조영업행위	
	4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5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6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7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 또는 판매 하는 행위(단,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하여 신고한 제품에 한함)	
	8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가. 영업허가(신고) 취소(폐쇄) 나. 영업정지 다. 품목류제조정지 라. 품목제조정지 마. 시정명령	
	9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이 확인되어 현지시정,행정 지도를 받은 행위	
구분 분야별	신 고 대 상	보상금 (만원)	
불 법 식 품 접 객 업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2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3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4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5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6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주 소			③ 업 소 명		④ 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⑤ 영업장총면적	㎡(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⑤ 영업장총면적	㎡(    평)		
	⑥ 계획 내용					⑥ 계획 내용			
자금용자 신청내역	⑦ 실소요금액	⑧ 융자신청금액	⑨ 비율(⑧/⑦)	⑩ 비 고	자금용자 신청내역	⑦ 실소요금액	⑧ 융자신청금액	⑨ 삭제	⑩ 비 고
			%						
<p>위와 같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 신청인                    (인)</p> <p>군산시장 귀하</p>					<p>위와 같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 신청인                    (인)</p> <p>군산시장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삭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음 식 종 류	가    격	비    고							
<p>위와 같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업소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p> <p>군산시장 귀하</p>									

## 군산시 공고 제2015 -1372호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9. 4.

## 군 산 시 장

###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 구성 등 (안 제2조)

- 민간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 보고 안전에 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나. 분과위원회 구성 등 (안 제3조)

- 분과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 분과위원회 간사는 업무관련 주관과장으로 함

## 다. 분과위원회 임무 (안 제5조)

○ 4개 분과위원회 종류와 임무

1. 생존분과위원회 : 어린이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생존의 권리와 관련된 업무분야
2. 보호분과위원회 : 어린이가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된 업무분야
3. 발달분과위원회 : 어린이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관련된 업무분야
4. 참여분과위원회 : 어린이가 시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업무분야

## 라. 의견청취 (안 제8조)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의 의견 청취

##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및 제18조

## 4. 의견제출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어린이행복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전화 063-454-4172, 팩스 063-454-4159, 전자우편 sonzoa@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 어린이지원계

(전화 063-454-4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민간공동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행복과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 보고 안전에 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분과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실행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주관 과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임무등)**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등)**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민간공동위원장은 어린이행복도시 조성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제안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회의내용을 적고 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심의 및 의결 결과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 외에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주소 또는 거소						
E-mail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직업						
경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생존분과위원회 ( )		보호분과위원회 ( )			
	발달분과위원회 ( )		참여분과위원회 ( )			
※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군산시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    -    )			
E-mail				
직 업				
경 력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휴대전화			
소 속 (추천단체)	*기관단체명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생존분과위원회 (    )		보호분과위원회 (    )	
	발달분과위원회 (    )		참여분과위원회 (    )	
※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상기자를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직인

군산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표)

### 분과위원회별 업무 분야 (제5조 관련)

분과	업 무 분 야
생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생존의 권리와 관련된 업무분야</li> <li>- 생명보호, 돌봄, 보육, 건강, 급식, 보건의료, 적절한 생활수준 유지 등</li> </ul>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가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된 업무분야</li> <li>- 학대와 방임 예방, 차별금지, 학교 폭력 예방, 약물과 성폭력 예방, 안전교육안전실습, 안전환경, 아동보호지원 인프라 확충, 범죄예방 환경 조성 등</li> </ul>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관련된 업무분야</li> <li>- 교육, 인격·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개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놀이와 여가 활동 등</li> </ul>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가 시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업무분야</li> <li>- 아동의견 수렴 창구 운영, 시정참여 및 활동 지원, 학교에서의 참여권 보장 등</li> </ul>

군산시 공고 제 2015-1375호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 중 건축허가 관련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대한 전결권 상향조정을 통해 사전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의 신중한 의사결정 처리와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결권자 조정(안 별표)

- 건축과 전결사무 단위업무 중 “건축허가, 건축허가변경, (임시)사용승인” 전결사무를 연면적 및 층수별로 세분화하고 전결범위를 상향 조정

- ▶ 건축허가·건축허가변경·(임시)사용승인 전결사항

연면적 및 층수별 기준		전결권자	비 고
4층이하	1,000m <sup>2</sup> 미만	계 장	
5층이하	1,000 ~ 3,000m <sup>2</sup> 미만	과 장	
6층이상	3,000m <sup>2</sup> 이상	국 장	

➤ 건축공사로 인한 중요민원처리(다수관련민원) : 부시장 전결

나. 전결권자 명칭 변경 : 담당 ⇒ 계장으로 변경(안 별표)

### 3. 의견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30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청 총무과
- (2) 군산시청 총무과 ☎ 454-2244, Fax. 454-22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시정계 담당자 김태균(☎ 454-22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참고

군산시 규칙 제 호

##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건축과 사무전결 처리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군산시 사무의 전결사항

부서명	일련 번호	사무내용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계장				
건축과	18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협의포함) 등 ※ 증축의 경우 증축분만 적용						
		가. 4층이하로서 연면적 1,000㎡미만인 건축허가, 건축 허가변경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기안	○				
		나. 5층이하로서 연면적 1,000㎡이상~3,000㎡미만인 건축물 건축허가, 건축허가변경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기안		○			
		다. 6층이상,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 건축허가, 건축허가변경,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기안			○		
		라. 건축지도원 임명	기안		○			
		마. 건축공사 관련자 변경 신고수리	기안	○				
		바.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및 사용승인	기안	○				
		사. 건축공사로 인한 중요민원처리(다수관련민원 )	기안				○	
		아. 건축공사로 인한 일반 민원처리	기안		○			
		자. 건축민원1회 방문협의	기안	○				

□ 신규조문 대비표

[별표]		현		행		개		정		안	
부서명	일련 번호	사무내용	사무의 전결 사항		사무의 전결 사항		담당자	실무자	시무내용	전결권자	
			기안	결재	기안	결재				담당자	실무자
건축과	18	건축 허가및 사용승인(협의포함) ※ 증축의 경우 증축분만 적용	기안	○	기안	○			기안	○	
		가. 4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허가	기안	○	기안	○			기안	○	
		나. 5층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안	○	기안	○			기안	○	
		다. 건축물설계변경(허가에준함)	기안	○	기안	○			기안	○	
		라.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4층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인 건축물)	기안	○	기안	○			기안	○	
		마.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5층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기안	○	기안	○			기안	○	
		바~아. <현행과 같음>	기안	○	기안	○			기안	○	
		자. 건축공사로 인한 중요민원처리 (다수관련민원)	기안	○	기안	○			기안	○	
		차~카. <현행과 같음>	기안	○	기안	○			기안	○	

군산시 공고 제2015 - 1377호

## 공 고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시(안 제1조)
-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지식재산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13조)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7F  
(☎ 063-454-2663, FAX:452-2695)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063-454-2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3.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 및 전략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진흥계획의 추진 및 지식재산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고 학생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역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의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8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대학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시장은 지역내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지식재산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
-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19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공고 제2015 - 1382호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군 산 시 장

###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 사업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해병대 최초전투인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의 전과를 기념하고 업적을 계승·발전하고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 사업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과 지원사업 대상 규정 (안 제4조)

#### 1.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총무과 (☎ 063-454-2246, FAX 454-22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시정계

(☎ 063-454-22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 사업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 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의 최초전투인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의 전과를 기념하고 업적을 계승·발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병대 최초전투”란 해병대가 최초 작전명령 제1호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가하게 된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를 말한다.
2.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이란 한국전쟁 당시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해 적과 맞서 싸운 전투를 기념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 사업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 행사
2. 해병대 최초전투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해병대 최초전투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공고 제2015 - 1383호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지역 범죄예방 및 주민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 및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자율방범대 임무 및 조직구성·활동 (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자율방범대 지원 등 및 지도·감독 (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교육 및 포상 (안 제7조 및 제8조)

### 2.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총무과 (☎ 063-454-2246, FAX 454-22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시정계

(☎ 063-454-22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역 범죄예방 및 주민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 및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읍·면·동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 활동 및 치안 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지역 내 각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
3.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6.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방범대 및 연합회의 조직, 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간 방법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방법대의 활동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읍·면·동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시장은 방법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소의 설치 및 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 방법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방법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법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법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법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범죄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는 「군산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

● **군산시 공고 제2015-1386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주택법』 제43조 조항 변경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정비
- 나.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개정
-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근거 법령 없이 요구할 수 없음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결정 취소 사유 중 일부가 과도한 규제이므로 조문 삭제(안 제12조)
- 나. 군산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 또는 임명 대상 위원, 위원장,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주택법시행령 제67조의 개정된 조문으로 반영함.(안 제14조)
- 다. 군산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을 주택법 제52조의 개정된 조문을 반영함.(안 제15조)
-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근거 법령이 없이 요구할 수 없음을 반영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수정함.(별지 제3호 및 제8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30일까지 군산시청(참조 : 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 : [kkan0223@korea.kr](mailto:kkan0223@korea.kr)
- 2) 주 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건축과(공동주택관리팀)
- 3) 팩 스 : 063-452-88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전화 : 063-454-37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문, 별지신청서, 신규대비표 각1부.  
현행조문, 개정조문(게재실음생략) 끝.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주택법」 제43조제9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을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별지 제3호서식 및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 제43조의3, 제52조, 제59조 및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주택법」 제43조제9항 ----- ----- ----- ----- -----.</p>
<p>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p> <p>② (생략)</p>	<p>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p>	<p>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p>

-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또는 분쟁조정 신청인이 추천하는자 2명
-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또는 피신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청인이 추천하는자 2명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4. 주택관리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

5. 우리시 소속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제1호에 따라 추천한 추천인을 조정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한다.

<삭 제>

④ ~ ⑥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15조(위원회의 기능) -----  
-----  
-----.

- 1. ~ 3. (생 략)
-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5. (생 략)  
<신 설>
- 6.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 -----  
-----
- 5. (현행과 같음)
-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6. (현행과 같음)

## 군산시 공고 제2015-1399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개정·폐지)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필요

####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조항규정 명시(5년초과 불가)

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존치 필요가 있을시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가능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필요

다. 제11조 제2항중 “담당”을 “계장”으로제14조제1항중 “문화정책담당”을 “문화정책계장”으로 변경

#### 3. 의견제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청 문화예술과(전화 : 454-3283, FAX : 063-454-326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 고장석

(전화 063-454-32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붙임참고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정책담당”을 “문화정책계장”으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다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간사) ① (생 략)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술 진흥 업무 <u>담당</u> 이 된다.	제11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계장</u> -----.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u>문화예술과장</u> 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u>문화정책담당</u> 이 된다. ② (생 략)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 ----- ----- <u>문화정책계장</u>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생 략) <신 설>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다른 <u>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개정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2015. 7. 24 >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 33조 제 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 2015. 7. 24 >

군산시 고시 제2015-115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9호선의 1개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 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 063-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9월 4일

1. 사업시행지 : (당초)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6번지의 24필지  
(변경)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6-2번지의 2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군산2차 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중로1-19호선의 1개노선)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구분	노 선 명	시설결정		금회 실시계획(변경)인가						비고
				당 초			변 경			
		폭원 (m)	연장 (m)	폭원 (m)	연장 (m)	면적 (㎡)	폭원 (m)	연장 (m)	면적 (㎡)	
도로	중로1-19	20	1,050	20	160	3,228	20	160	3,238	진출입 구간개설
	중로3-70	12	154	12	154	1,847	12	154	1,852	전구간 개설

4. 사업시행자(변경)
 

당초 군산시 수송안길 3(수송동 3층),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 전미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 김위철

변경 군산시 수송안길 3(수송동 3층),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 윤성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 김위철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3. 1. 2 ~ 2015.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종로1-19호선

(단위 : m<sup>2</sup>)

순번	위치	변경전				변경후				증감	도기변경사항	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	평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평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935-8	답	515	234	935-17	답	458	234	-	935-8에서 분할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2		938-1	진	222	60	938-2	진	60	60	-	938-1에서 분할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3		916	답	539	538	916-2	답	538	538	-	916에서 분할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4		935-1	답	173	127	935-18	답	128	128	증 1	935-1에서 분할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5		935-3	도	9	9	935-3	도	9	9	-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6		936-3	도	36	34	936-4	도	34	34	-	936-3에서 분할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유성필	전라북도 군산시 신광2길 21(지곡동)			
7	옥산면 당북리	962-1	답	439	21	962-13	답	21	21	-	962-1에서 분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1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8		962-2	답	3,350	54	962-14	답	62	62	증 8	962-2에서 분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1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9		962-6	답	209	12	962-15	답	12	12	-	962-6에서 분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1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0		962-10	답	1,380	1,380	962-10	답	1,380	1,380	-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11		962-12	답	685	685	962-12	답	685	685	-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12		963	진	3	3	963	진	3	3	-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13		994-14	도	487	71	994-20	도	72	72	증 1	994-14에서 분할	국(농수산부)				
계		13필지		8,047	3,228	13필지		3,462	3,238	증 10						

(단위 : m<sup>2</sup>)

○ 중로3-70호선

순번	위치	변경전				변경후				증감	토지번경사한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	평임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평임면적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주소	
1	913-15	임	297	297	297	913-15	임	297	297	-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2	917-2	답	69	69	69	917-2	답	69	69	-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3	917-3	답	231	231	231	917-3	답	231	231	-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4	918-1	전	315	315	315	918-1	전	315	315	-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5	919-3	전	164	164	164	919-3	전	164	164	-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6	919-5	전	31	31	31	919-5	전	31	31	-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유성필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2길 21(지곡동)					
7	934-7	대	1	1	1	934-7	대	1	1	-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유성필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2길 21(지곡동)					
8	935-8	답	515	219	224	935-17	답	458	224	증 5	935-8에서 분할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9	935-11	도	91	91	91	935-11	도	91	91	-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유성필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2길 21(지곡동)					
10	935-12	도	21	21	21	935-12	도	21	21	-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유성필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2길 21(지곡동)					
11	935-13	답	217	217	217	935-13	답	217	217	-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12	935-15	답	82	82	82	935-15	답	82	82	-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유성필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2길 21(지곡동)					
13	994-18	도	109	109	109	994-18	도	109	109	-	-	국(농수산부)						
계	13필지		2,143	1,847	2,086	13필지		2,086	1,852	증 5								

7.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실제이용상황 (구조 및 규격)	수량 또는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 당북리	919-5	전	보일러실	써멘조립식 목조스레이트지붕 보일러포함(6.5*1.8)	11.7㎡	김세원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외당원길 78				
				담장	써멘조립식 H=1.8m	11m						
				창고	목조 스테이트지붕 (3.0*1.8)	5.4㎡						
				장독대	콘크리트(2.0*2.5)	5.0㎡						
				두릅나무		15주						
				대추나무	H2*R5	1주						
				매실나무	H2*R5	4주						
				장미		2주						
				연산홍	H1*W1	3주						
				유카		6주						
2	옥산면 당북리	935-15	담	대문	철첩식대문(B0.8*L8.5) 조적조콘크리트문주포함	1식	김창원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외당원길 83				
				토끼장	철과이프조철관지붕(5*5) 토끼7마리포함	25㎡						
				사철나무	H2*W1.5	1주						
				명자나무	H2.5*W2	1주						
				연산홍		3주						
				동백나무	H2*R5	1주						
				무궁화1		3주						
				능소화		1주						
				무궁화2	H1.5*W1.0	6주						
				향나무	H1.5*W1.0	1주						
				장미		5주						
				측백나무	H3*W3	10주						
				개나리	H1.5*W1.0	16주						
				깨죽나무	H3*R10	5주						
				사철나무	H2.5*R15	1주						
				이팝나무	H5*R15	2주						
배나무	H4*R10	2주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 생략

9.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5-116호

### 군산 금강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금강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군 산 시 장

2015년 9월 11일

####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5	금강공원	근린공원	대로1-4 연안 일원	270,460	-	270,460	전북도고시 제2003-5호 (2003.1.9)	

#### 2.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총괄표

시설구분	부 지 면 적(m <sup>2</sup> )			시 설 면 적(m <sup>2</sup> )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70,460.0	-	270,460.0	3,397	증)500	3,897	6,082	증)300	6,382
시설면적총계	99,799.7	-	99,799.7	3,222	증)500	3,628	5,907	증)300	6,087
공통시설	45,722.2	-	45,722.2	-	-	-	-	-	-
조경시설	11,649.5	-	11,649.5	-	-	-	-	-	-
휴양시설	1,053.0	-	1,053.0	-	-	-	-	-	-
운동시설	12,589.5	-	12,589.5	-	-	-	-	-	-
교양시설	12,245.5	-	12,245.5	2,688	증)500	3,188	5,033	증)300	5,333
편익시설	15,457.0	-	15,457.0	194	-	194	194	-	194
관리및기타시설	1,083.0	-	1,083.0	340	-	340	680	-	680
기 타	170,660.3	-	170,660.3	175	-	175	175	-	175

## 3.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 가. 총괄조서

시설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비고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70,460.0	-	270,460.0	3,397	(증)500	3,897	6,082	(증)300	6,382	
시설면적총계		99,799.7	-	99,799.7	3,222	(증)500	3,722	5,907	(증)300	6,207	
공통 시설	소 계	45,722.2	-	45,722.2	-	-	-	-	-	-	
	도로	26,037.2	-	26,037.2	-	-	-	-	-	-	
	광장	11,019.0	-	11,019.0	-	-	-	-	-	-	8개소
	다목적광장	6,072.0	-	6,072.0	-	-	-	-	-	-	1개소
	진입광장	2,594.0	-	2,594.0	-	-	-	-	-	-	1개소
조경 시설	소계	11,649.5	-	11,649.5	-	-	-	-	-	-	
	잔디광장	7,259.5	-	7,259.5	-	-	-	-	-	-	1개소
	조경휴게지	4,390.0	-	4,390.0	-	-	-	-	-	-	2개소
휴양 시설	소계	1,053.0	-	1,053.0	-	-	-	-	-	-	
	평의자	347.0	-	347.0	-	-	-	-	-	-	7개소
	휴게소	261.0	-	261.0	-	-	-	-	-	-	2개소
	휴게광장	445.0	-	445.0	-	-	-	-	-	-	4개소
운동 시설	소계	12,589.5	-	12,589.5	-	-	-	-	-	-	
	건강지압보도	535.5	-	535.5	-	-	-	-	-	-	1개소
	축구장	12,054.0	-	12,054.0	-	-	-	-	-	-	1개소
교양 시설	소계	12,245.5	-	12,245.5	2,688	(증)500	3,188	5,033	(증)300	5,333	
	상징조형물	1,679.0	-	1,679.0	-	-	-	-	-	-	1개소
	채만식문학관	906.5	-	906.5	388	-	388	533	-	533	1개소
	장애인복지관	9,660.0	-	9,660.0	2,300	(증)500	2,800	4,500	(증)300	4,800	1개소
편익 시설	소계	15,457.0	-	15,457.0	194	-	194	194	-	194	
	화장실	416.0	-	416.0	194	-	194	194	-	194	5개소
	주차장	15,041.0	-	15,041.0	-	-	-	-	-	-	7개소
관리 및 기타 시설	소계	1,083.0	-	1,083.0	340	-	340	680	-	680	
	관리사무소	1,051.0	-	1,051.0	340	-	340	680	-	680	1개소
	하수펌프장	32.0	-	32.0	-	-	-	-	-	-	1개소
기타	소계	170,660.3	-	170,660.3	175	-	175	175	-	175	
	초소	785.0	-	785.0	175	-	175	175	-	175	1개소
	녹지	169,875.3	-	169,875.3	-	-	-	-	-	-	

## 나. 공원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 원	전 체 면 적																			
시 설	면 적 소 계																			
	소 계																			
	1-1	1-1	도로	-																
	1-2	1-2	광장1	구암동 601-42																
	1-3	1-3	광장2	구암동 601-42																
	1-4	1-4	광장3	구암동 601-42																
공 통	1-5	1-5	광장4	내흥동 903																
시 설	1-6	1-6	광장5	내흥동 285																
	1-7	1-7	광장6	성덕리 487-19																
	1-8	1-8	광장7	성덕리 487-19																
	1-9	1-9	광장8	성덕리 487-19																
	1-10	1-10	다목적광장	내흥동 894																
	1-11	1-11	진입광장	내흥동 894																
	소 계																			
조 경	2-1	2-1	잔디광장	내흥동 283																
시 설	2-2	2-2	조정휴게지1	내흥동 894-15																
	2-3	2-3	조정휴게지2	성덕리 457-1																

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바닥면적		건축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1,053.0	-	1,053.0	-	-	-	-	-	-	-	-
	3-1	3-1 평의자1	경암동 492-1	24.0	-	24.0	-	-	-	-	-	-	-	-
	3-2	3-2 평의자2	경암동 492-1	33.0	-	33.0	-	-	-	-	-	-	-	-
	3-3	3-3 평의자3	내홍동 894-31	47.0	-	47.0	-	-	-	-	-	-	-	-
	3-4	3-4 평의자4	내홍동 894-31	47.0	-	47.0	-	-	-	-	-	-	-	-
	3-5	3-5 평의자5	내홍동 894-54	53.0	-	53.0	-	-	-	-	-	-	-	-
	3-6	3-6 평의자6	내홍동 903	69.0	-	69.0	-	-	-	-	-	-	-	-
	3-7	3-7 평의자7	내홍동 903	74.0	-	74.0	-	-	-	-	-	-	-	-
	3-8	3-8 휴게소1	경암동 327-2	130.0	-	130.0	-	-	-	-	-	-	-	-
	3-9	3-9 휴게소2	내홍동 285	131.0	-	131.0	-	-	-	-	-	-	-	-
	3-10	3-10 휴게광장1	내홍동 285	26.0	-	26.0	-	-	-	-	-	-	-	-
	3-11	3-11 휴게광장2	내홍동 285	64.0	-	64.0	-	-	-	-	-	-	-	-
	3-12	3-12 휴게광장3	내홍동 285	120.0	-	120.0	-	-	-	-	-	-	-	-
	3-13	3-13 휴게광장4	내홍동 285	235.0	-	235.0	-	-	-	-	-	-	-	-
	소	계		12,589.5	-	12,589.5	-	-	-	-	-	-	-	-
운동 시설	4-1	4-1 긴강지압보도	내홍동 894-53	535.5	-	535.5	-	-	-	-	-	-	-	-
	4-2	4-2 축구장	내홍동 894	12,054.0	-	12,054.0	-	-	-	-	-	-	-	-
	소	계		12,245.5	-	12,245.5	2,688	(증)500	3,188	5,033	(증)300	5,333		
교양 시설	5-1	5-1 상징조형물	성덕리 487-18	1,679.0	-	1,679.0	-	-	-	-	-	-	-	-
	5-2	5-2 채만식문학관	내홍동 285	906.5	-	906.5	388	-	388	533	-	533		
	5-3	5-3 장애인복지관	성덕리 462-2	9,660.0	-	9,660.0	2,300	(증)500	2,800	4,500	(증)300	4,800		

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기정 변경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표면적(m <sup>2</sup> )		건축바다면적		시설표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소	계		15,457.0	-	15,457.0	194	-	194	-	194	194
	6-1	화장실1	구암동 601-112	16.0	-	16.0	16	-	16	-	16	16
	6-2	화장실2	내흥동 904	99.0	-	99.0	32	-	32	-	32	32
	6-3	화장실3	내흥동 894-21	100.0	-	100.0	32	-	32	-	32	32
	6-4	화장실4	성덕리 461-13	110.0	-	110.0	57	-	57	-	57	57
편의	6-5	화장실5	성덕리 487-19	91.0	-	91.0	57	-	57	-	57	57
	6-6	주차장1	구암동 601-42	809.0	-	809.0	-	-	-	-	-	-
시설	6-7	주차장2	내흥동 904	1,631.0	-	1,631.0	-	-	-	-	-	-
	6-8	주차장3	내흥동 894-15	1,949.0	-	1,949.0	-	-	-	-	-	-
	6-9	주차장4	내흥동 903	6,903.0	-	6,903.0	-	-	-	-	-	-
	6-10	주차장5	내흥동 287-5	2,323.0	-	2,323.0	-	-	-	-	-	-
	6-11	주차장6	내흥동 285	284.0	-	284.0	-	-	-	-	-	-
	6-12	주차장7	성덕리 461-20	1,142.0	-	1,142.0	-	-	-	-	-	-
관리 및 기타 시설	소	계		1,083.0	-	1,083.0	340	-	340	-	340	680
	7-1	관리사무소	내흥동 329-15	1,051.0	-	1,051.0	340	-	340	-	340	680
	7-2	하수펌프장	내흥동 339-2	32.0	-	32.0	-	-	-	-	-	-
	소	계		170,660.3	-	170,660.3	175	-	175	-	175	175
기타	8-1	초소	성덕리 487-20	785.0	-	785.0	175	-	175	-	175	175
	8-2	녹지	-	169,875.3	-	169,875.3	-	-	-	-	-	-

다. 도로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군산시 고시 제2015-117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금강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금강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063-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9월 1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62-2번지 일원(금강공원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금강공원)사업
  - 명 칭 :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사업(금강공원)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9,660㎡(건축면적 2,705.82㎡, 건축연면적 4,679.0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군산시장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7년 2월 28일
6. 공사설계도서 : 게재실음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시,면	동,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총 계			10필지		14,144	9,660					
1	군산	내흥	282	답	2,317	1,628	군산시				
2	군산	내흥	286	답	2,280	1,968	군산시				
3	군산	내흥	287-3	답	976	687	군산시				
4	성산	성덕	461-7	답	2,251	714	군산시				
5	성산	성덕	461-11	답	1,851	217	군산시				
6	성산	성덕	461-8	답	1,899	1,899	군산시				
7	성산	성덕	462-1	구거	26	26	주상준	성산면 성덕리 425			
8	성산	성덕	461-10	답	17	17	군산시				
9	성산	성덕	461-9	답	144	144	군산시				
10	성산	성덕	462-2	답	2,383	2,360	군산시				

8.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게재실음생략

9.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 비용계산서 : 게재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 2015-119 호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9. 15.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36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5-1330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9월 4일

- 1.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3.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470번지의 4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임피 지구단위구역 도시계획시설(취락지구:도로)사업
    - 2) 명 칭 : 임피 대흥교회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변경)인가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도로	중로 2-1	15	441	8	22	186	
	소로 3-1	6	370	6	77	479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161-11 호원아키텔 324호
  - 2) 사업시행자 성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흥교회 대표 선성관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
  - 당초 : 2007. 10. 12. ~ 2015. 08. 31.
  - 변경 : 2007. 10. 12. ~ 2017. 08. 31.
- 4.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전체
- 5.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 사용 및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별 총괄조서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총 계	5	665	100.0	
국·공유지	3	322	48.4	
사 유 지	2	343	51.6	

○ 중로2-1호선

순번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1	470	전	853	51	국)재정경제부				
2	470-1 3	전	106	89	국)재정경제부				
3	647	도	9,849	46	국)건설교통부				
합계		3필	10,808	186					

○ 소로3-1호선

순번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1	470	전	853	136	국)재정경제부				
2	470-2 1	전	77	77	최향란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161-11 호원아키텔 324	이정희 이정희	근저당 지상권	임의경매 개시결정
3	470-2 3	임	266	266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흥교회	군산시 나운동 825-7			
합계		3필	1,196	479					

군산시 공고 제 2015-1370호

## 군산시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마을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3일

##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도난 및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방범용 CCTV의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 고시공고란

4. 행정예고기간 : 2015. 9. 4 ~ 9. 24 (20일간)

5. 행정예고내용

1) 설치장소 : 군산시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3)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4일** **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 총무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서식 : “붙임”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3-454-2227)

마. 제출처 : (우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총무과

바. 문의처 : 전북 군산시 총무과(☎063-454-224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붙임 1】 CCTV설치 예정 장소

연번	행정동	마을명	설치예정지	수량 (대)	비 고
계	4개면	9개마을	15개소	15대	
1	대야면	신월 (2)	대야면 산월리 373-8	1	
2			대야면 산월리 373-17	1	
3		초산 (2)	대야면 보덕리 산134-2	1	
4			대야면 보덕리 921	1	
5		하광 (2)	대야면 광교리 579-9	1	
6			대야면 광교리 609-1	1	
7	개정면	아촌 (1)	개정면 아동리 582-5	1	(위치변경) 前개정면 아동리 산 29 -1
8		와룡 (1)	개정면 운회리 861	1	(위치변경) 前개정면 운회리 527-18
9		우산 (2)	개정면 통사리 444-5	1	(위치변경) 前개정면 통사리 365-2
10			개정면 통사리 409-3	1	(위치변경) 前개정면 통사리 447-8
11	나포면	등동 (2)	나포면 옥곶리 918 (마을 체육시설 앞)	1	
12			나포면 옥곶리 433-6 (마을회관 앞)	1	
13		문화 (2)	나포면 교동2길 5 (작은도서관 앞)	1	
14			나포면 옥곶리 463 (나포농협 옆)	1	
15	옥도면	말도 (1)	옥도면 말도리 산30	1	

## 【붙임 2】 의견제출서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군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p>군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9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군 산 시 장 귀하</p>			

군산시 공고 제2015-138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전북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9월 11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74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전북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사업
  - 나. 명 칭 : 전북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청사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결정	금회 실시계획인가	최초결정일
			면적(m <sup>2</sup> )	면적(m <sup>2</sup> )	
공공청사	전북경찰청 기동1중대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745번지	8,079	8,079	전북고2015-171 (2015.08.07)

- 규 모 : 건축면적 1,402.58m<sup>2</sup>, 건축연면적 2,732.06m<sup>2</sup>

4. 사업시행자
  - 가.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28
  - 나. 성 명 : 전북지방경찰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2. 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개정면 아동리	745	대	8,209	8,079	국(경찰청)	-	-	-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9.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5-1394호

## 전통시장 인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군 산 시 장

1. 제 목 : 전통시장 인정 공고
2. 지정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3. 공고기간 : 2015. 9. 11. ~ 2015. 9. 30.(20일간)
4. 공고대상 : 전통시장 인정

등록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점포수	면적	인정일
2015-3	군산수산물 종합센터	송기용	군산시 내항2길 216 (금동)	147개	10,714.65㎡	2015.9.9

5. 기타문의사항 : 군산시 지역경제과(☎063-454-2702)

군산시 공고 제 2015-1403호

##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9. 14. ~ 2015. 9. 29. (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연번	회사명	대표자	주 사무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행정처분 예정
1	(주)세전특수 군산영업소	최*호	군산시 옥산면 용호길 64 (남내리 50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차고지 확보) 위반	이사감	사업전부정지 30일

4. 의견제출기한 : 2015. 9. 30. 18:00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063-454-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9. 11.

군 산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b>허가기준 미충족(차고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전부정지 30일</b>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